

[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]

제1조 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

1. 계약기간

- ① 이용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
- ② 등급 변동, 또는 계약기간 종료,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
- ③ 노인장기요양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2. 계약목적

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"(A)"+연세재가복지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며,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- ① 수급자 어르신 요양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-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-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
서비스 계약체결 : 신청자(보호자)에게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, 서비스제공 전 신청자(보호자)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.

※ 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※ 제공기관 서비스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3.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 <표1~2>와 같이 한다.

.월이용료

본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(표1~표2) 에 의한다.

표1)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<표1>

구 분	금액 (원)	구분	금액(원)
30분 이상	17,450	150분 이상	50,640
60분 이상	25,320	180분 이상	57,020
90분 이상	34,120	210분 이상	63,530
120분 이상	43,430	240분 이상	70,080

표2)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<표2 예시>

㉞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(원)

1등급(원) : 2,512,900

2등급(원) : 2,331,200

3등급(원) : 1,528,200

4등급(원) : 1,409,700

5등급(원) : 1,208,900

㉞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일반(15%)

감경(6%~9%)

국민기초(0%)

㉞ 기타비용

.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%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.

.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4.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,계약의 해제 (신원인수인: 보호자 또는 보증인)

1) 권리

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
② 수급자의 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
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
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2) 의무

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
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
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

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

㉠ 수급자의 권리

-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.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.
- ③ 모든 수급자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④ 수급자의 요양, 재활서비스, 요양과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, 기본권, 자율권보호 및 존경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.
-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.
- ⑧ 본 기관 요양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.

㉡ 급여제공시 의무사항

- ① 비밀보장 :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.
- ② 기록 및 공개 :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.

㉢ 계약자, 당사자의 의무

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(수급자)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.

1.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
-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
(단, 병·의원 입원 시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)
-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③ 표준 방문요양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 의무

2. 수급자의 의무

-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②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
- ③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-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의 의무

5. 계약의 해제.

1.대상자(보호자)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-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-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(보호자)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
- ④ 기타 대상자(보호자)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
2.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(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-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-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-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-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-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-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때
- ⑧ 3회 이상 이용료(본인부담금)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
- ⑨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
- ⑩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. 단,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.
- ⑪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